

■ 인감증명법 시행령 [별지 제14호의2서식] <신설 2024. 5. 7.>

문서확인번호	-	-
신청인: (생년월일:), 담당자: (전화:)		

주민등록 번호	-		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	
성명 (한자)	()		인감	
국적				
주소				
일반 용	발급용도		제출처	
	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 (발급신청자)			(서명)
비고				
<p>1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는 인감을 신고한 자 본인(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)이 전자민원창구(www.gov.kr)를 통해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('자동차관리법'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)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고,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</p> <p>가. 송무, 등기('후견등기에 관한 규칙'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,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</p> <p>나. 예금, 대출, 보험,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</p> <p>2. 주민등록번호란에는,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,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,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()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.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(거소지, 체류지)를 기재하며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.</p> <p>4. 전자민원창구(www.gov.kr)를 통해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반드시 기재해 신청해야 하고, 본인이 최종적으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며,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5. 발급용도란에는 '행정기관 제출용', '경력 증명'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6.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(www.gov.kr)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(정부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 사용)을 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7. 직인의 날인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.</p>				
발급번호	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.			
년 월 일				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자치구청장 직인				

[발급기관 고유코드] 주소지 증명청: ○○○

210mm×297mm[일반용지(80g/m²)]